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고양시의회**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조 례 안 예 고



고 양 시 의 회

목 차

의안 번호	조 례 명	대 표 발의자	페이지	비고
244	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	권순영의원	3	
258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우의원 소영환의원 장제환의원	9	
259	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우영택의원 장제환의원 이화우의원	18	
	이 하 빈 칸			

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 (권순영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4
----------	-----

발의연월일 2012. 4. 19.
발 의 자 권순영의원
(찬성의원 6명)

제안이유

- 1992년 2월 1일 제정된 「고양시 문화상 조례」는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하여 오고 있으나,
- 최근 자격 미흡 자가 선정 수상하는 민원성 여론과 문화상의 권위 추락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고양시 문화상의 비효율성이 지적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고양시 문화상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폐지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입법 예고기간 : 해당없음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문화상 조례 폐지 조례안

고양시 문화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문화상 조례

[제정 1992-02-01 조례 제14호]

[개정 2008-12-12 조례 제1151호(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 고장에 뿌리를 내리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고양시문화상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밝고 활기찬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수상대상) 문화상의 수상 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고양시인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 (시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이 5개 부문으로 한다.

1. 학술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체육부문 1명
5. 지역사회개발 1명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장 또는 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자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상) ①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시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8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제9조 (실비변상)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제4조 규정의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문화상 운영 사례

구 분	문화상 조례		비 고
	운영	미 운영	
계	31	214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7)	2 (서울, 인천)	5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9도(제주특별자치도 포함)	6 (강원,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3 (경기, 충북, 제주)	
경기도(31개 시·군)	12	19	
기타 시·군(198개 시·군)	11	187	

※ 전국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를 포함 31개 도시(군)에서만 운영

○ 최근 문화상 조례 폐지 현황(11개 도시·군)

시(군)	제정연도	폐지연도	비 고
경기도	1976	2011	
마산시	1995	2010	
창원시	1995	2010	
울산광역시	1997	2009	
대구광역시	1981	2008	
충주시	1997	2008	
남양주시	1995	2008	
연천군	1984	2006	
대전광역시	1989	2002	
진주시	1996	2000	
부산시	1968	1980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화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
----------	-----

발의연월일 2012. 4. 23.

발의자 이화우의원
소영환의원
장제환의원
(찬성 4명)

□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 가.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회로 함.

한편 단서조항으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안 제14조의2 제1항)

나. 이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 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다시 명하여야 함.(안 제14조의2 제2항)

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은 이 일부개정 조례안의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개정조례안 : 별 첨

신·구조문 대조표 : 별 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3조의2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 수반 사항 : 해당없음

그 밖에 참고사항 : 해당없음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고양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지정휴업일은 매월 2번째 일요일과 4번째 일요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 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4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u>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고양 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하여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u> <u>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u> <u>2.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하며, 지정 휴업일은 매월 2번째 일요일 과 4번째 일요일로 한다.</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②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 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관계 법령 발췌서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2005.12.23, 2008.2.29, 2008.3.21, 2010.11.24>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4. "입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지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

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7. "전문상가단지"라 함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 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8. "무점포판매"라 함은 상시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식경제 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통표준코드"라 함은 상품·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2. "물류설비"라 함은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호의2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①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신설 2009.10.1>

[전문개정 2006.6.22]

[제목개정 2009.10.1]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31]

[별표 1] <개정 2009.10.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 형태에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우영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
----------	-----

발의연월일 2012. 4. 23.

발의자 우영택의원
장제환의원
이화우의원
(찬성 4명)

제안이유

사회적 저명인사를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문화예술, 관광, 특산품 등 시정 홍보 극대화 하는 등 우리시의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홍보대사의 임무를 정함. (안 제2조)
- 나. 홍보대사의 위촉·해촉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다.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 라.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예고기간 :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고양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고양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홍보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합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공보담당관에서 주관 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공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